

의안번호	2207747
의 퇴 인	권칠승의원
회 답 일	2024.2.17.
추계번호	25D0482

국회경위처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회경위처를 신설하여 125명을 신규증원할 경우 인건비, 기관부담금, 기본경비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94억 7,300만원(연평균 78억 9,500만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연계 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22조의5 및 제37조 제1항에서 추계된 비용과 동일한 비용으로, 재정소요가 두 법안과 중복으로 발생하지 않음

[표 1]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합계	7,591	7,739	7,891	8,047	8,206	39,473	7,89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 (지위)	국회경위처(이하 “경위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둠	의무규정
2	안 제3조(직무)	경위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의장공관을 포함한다)의 경호, 방호 및 경비, 의장 및 부의장의 경호, 국회를 방문하는 국내외 중요 인물의 경호, 국회 출입의 안전검색 및 관리, 테러(사이버테러는 제외한다)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회의 경호에 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처리함	의무규정
3	안 제4조 (처장)	국회경위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함(제1항)	재량규정

1) 의안번호 제2207748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5조 (국회경위처장추천위원회)	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5제3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경위처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함(제1항)	재량규정
5	안 제8조 (조직)	경위처의 보조기관은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함(제1항) 처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처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음(제2항)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이나 특정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2급 상당부터 4급 상당까지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함(제3항) 경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와 담당관의 설치,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 다만, 과와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사무분장은 처장이 정할 수 있음(제4항)	의무규정
6	안 제10조 (경위처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경위처의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인정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히 필요한 범위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함(제2항)	재량규정
7	안 제12조 (무기의 휴대 및 사용)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 (지위)	○	-
2	안 제3조(직무)	○	-
3	안 제4조 (처장)	-	-
4	안 5조 (국회경위처장추천위원회)	-	처장추천위원회 관련 비용은 경위처 기본경비 내 기타운영비 예산 내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에서 제외함
5	안 제8조 (조직)	-	-
6	안 제10조 (경위처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관)		수사·증거수집 활동을 위한 경비 소요 및 수사활동비 지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사법경찰관 리 공무원의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어려움
7	안 제12조 (무기의 휴대 및 사용)		휴대 및 사용할 무기의 종류, 규모, 가격 관련 자료 취득의 어려움으로 추계에서 제외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은 국회경위처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신설되는 조직의 구성·운영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신설되는 국회경위처의 직급별 인력(정원)은 직제 등 국회규칙에서 정하게 되므로, 현 시점에서 정원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 사무공간 건축비의 경우도 현재 국회경비대가 사용하는 공간이 있고 추후 제정안의 국회경위처의 규모가 확정된 후 그 규모에 따라 신·증축 등의 방식이 정해지므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비용을 추정하기 어려움
 - 자산취득비는 현재 국회경비대에 있는 자산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존 예산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국회경위처가 사용할 적정한 무기의 종류 및 규모, 가격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에서 제외함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증거수집 활동을 위한 경비 소요 및 수사활동비 지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사법경찰관리 공무원

의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추계에서 제외함

- 현재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는 경호기획관(의회경호담당관) 소속 경위, 경호기획관(의회방호담당관) 소속 방호 및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경찰)로 구분됨

[표 2] 현행 국회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 수행 조직 현황

구분	1선	2선	3선	계
신분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경찰)	—
소속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	경호기획관 (의회방호담당관)	서울지방경찰청	—
관련근거	「국회법」 제144조	「국회사무처법」 제2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	—
담당업무	·회의장 질서유지 ·의전경호 업무	·청사 경비 및 방호 ·주차관리 업무	·국회의사당 외곽 경비 ·국회의장 경호 ·국회의장공관 경비	—
정원	67명	134명	118명	319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제정안의 규정 및 현재 국회 안전·질서유지 업무 수행조직 규모를 고려하여 125명을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인건비, 기관부담금과 기본경비를 추계
 - 제정안은 국회경위처장을 두고, 현재 국회 경위, 방호 및 국회경비대(경찰)가 수행하던 업무에 경호대상을 확대(경호대상에 국회부의장을 포함)하도록 규정
 - 제정안에 따른 추가업무 등을 고려하여 국회경위처 전체 인력은 326명으로 가정
 - 현재 경호기획관 소속 경위 및 방호 인력 201명은 신설되는 국회경위처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에서 제외함
 - 국회경비대(경찰) 인력을 대체하는 118명에 국회경위처장 1명, 경호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인력 6명 등 125명을 신규증원함
- 추계에서는 2024년 국회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의 직급별 인건비 단

가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11월)한 공무원임금상승률²⁾을 적용하여 산정함

- 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건비 등

- 제정안에 따라 신규 설치되는 국회경위처의 신규증원인력 125명의 직급별 인원은 현 국회경비대(경찰)의 직급별 구성을 고려하여 배분함

[표 3] 국회경위처 신규증원 인력

(단위: 명)

	처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신규증원	1	0	0	0	1	1	12	11	25	74	125

주: 신규증원인력은 국회경비대(경찰) 대체 118명, 국회부의장 경호인력 6명, 국회경위처장 1명 등 125명임

자료: 국회사무처 및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인건비 단가) 직급별 인건비 단가는 2024년 국회 세입세출예산 각목 명세서를 참고³⁾하여 산정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상승률(2024.11.)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무원임금상승률(%)	1.9	1.9	1.9	1.9	1.9	1.9

3) 처장 및 1~4급은 기본연봉, 임법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5급은 1~4급 봉급 및 수당에 시간외수당을 추가하였고, 6~9급은 5급까지의 봉급 및 수당에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명절수당을 추가하였음

[표 4] 직급별 인건비 단가: 2024년

(단위: 천원)

직급	처장	1급	2급	3급	4급
인건비	170,638	152,580	142,575	119,713	101,930
직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인건비	107,138	73,352	61,035	45,754	40,315

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경위 5급의 호봉이 높아 5급 인건비 단가가 4급보다 높음
 자료: 국회사무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인건비) 신규 증원인력 125명에 대한 인건비는 2024년 인건비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함

[표 5] 증원인력 인건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건비	6,291	6,410	6,532	6,656	6,783	32,67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은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 기관부담금 효율⁴⁾을 적용하여 산정함

[표 6] 증원인력에 대한 기관부담금: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관부담금	822	842	862	884	908	4,31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 기본경비는 업무의 성격이 비슷한 경찰청 기동대의 총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7.6%를 적용하여 산정함

4)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기관부담 효율(2024.11.)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무원 기관부담 효율(%)	13.004	13.066	13.130	13.194	13.286	13.380

[표 7] 증원인력에 대한 기본경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본경비	478	487	496	506	515	2,48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국회경위처를 신설하여 125명을 신규증원할 경우 인건비, 기관부담금, 기본경비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94억 7,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국회경위처 신설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건비	6,291	6,410	6,532	6,656	6,783	32,673
기관부담금	822	842	862	884	908	4,317
기본경비	478	487	496	506	515	2,483
합계	7,591	7,739	7,891	8,047	8,206	39,47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현재 국회경비대(경찰)의 규모와 국회부의장의 경호인력 등을 고려하여 신설되는 국회경위처의 신규증원인력을 125명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결과로, 향후 국회경위처 인력규모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